

—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임.

3. 주요내용

- 지방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주민세 소득세할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"그 다음달 말일까지"에서 "그 다음달 15일까지"로 단축.
- 「도시계획법」이 폐지되고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이 2003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문 정비
-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"시·읍·면"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 것을 "시"에 두도록 함.
-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"7월 1일부터 7월 10일"에서 "7월 1일부터 7월 31일"로 연장.

4. 참고사항

- 지방세법 제177조4(소득세 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) 제3항
- 지방세법 제213조(농업소득조사위원의 설치)
- 지방세법 제250조(징수방법과 납기) 3항
-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14(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) 제1항 1호

5. 검토의견

- 지방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세무서장의 주민세 소득세할 과세자료 통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과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 임.
- 또한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·읍·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 것을 시에 두도록 하는 내용과 도시계획법 폐지로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 임.
- 따라서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의 개정안으로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